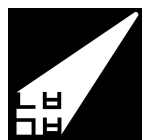


내부제보실천운동

2019년 제3회 정기총회

- 일시 : 2019년 2월 27일 저녁 7시
- 장소 : 문화살롱 기륜



내부제보실천운동

차 례

의장인사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상임대표 인사	
전차 회의록 승인	5
상정의안	19
제1호 의안 : 2018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21
제2호 의안 :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3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31
제4호 의안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5
제5호 의안 : 기타 안건	41
부록	43
정관	45
회원명단	54

전차 회의록 승인



2018년 제2회 총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1월 31일(수) 오후 7시

장소 : 협동조합 마지

내부제보실천운동

2018년도 제2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총회 회의록

1. 일시 : 2018년 1월 31일(수) 오후 7시
2.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5길 19 협동조합 마지
3. 출석회원 : 37명 (참석 12명, 위임 25명, 불참 32명)
4. 의장인사 : 의장 백찬홍 상임대표가 인사 말씀하고 회의를 시작하다.
5. 성원확인 및 회원점명 : 이지운 간사가 참석회원을 점명하니 정회원 69명 중 37명 참석 12명, 위임 25명 불참으로 보고하다.
6. 개회선언 : 의장이 정관 제14조 1항, 3항에 따라 정회원 69명 중 37명의 회원이 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개회 정족수가 되므로 내부제보실천운동 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7. 서기지정 : 의장 백찬홍이 이영이를 본 회의 서기로 추천하고, 모두가 동의하여 이영이가 서기 및 서명날인 인을 선임하다.
8.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에 대하여 이지운 간사가 보고하다.
이에 가부를 묻고 모두 “예”하여 전차회의록을 승인하다.
9. 의안 보고 및 채택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고 동의 여부를 묻다. 가부를 묻고 모두 “예”하여 의안상정을 승인하다.
제1호의안 : 2017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기타안건
10. 부의안건 심의
가. 2017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박광서 감사가 자료를 참조하여 감사보고를 하다.

의장이 감사보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묻고 본 안건 승인 동의 여부를 물으니 모두 “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다.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2017년도 활동과 업적을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총평:

(1) 2017년도 지출은 활동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 창립 이후 사회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단체로 부상해 언론과 세인의 주목을 받는 등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내부조직을 강화하는 데는 소홀해 단체의 내실 다지기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 사업

(1) 공익기금마련 플리마켓, 비전워크샵(2회), 후원의날-토크콘서트, 스토리펀딩, 방산비리 영화,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 등 1년 사이 해낼 수 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사회적 인지도 및 기금마련 차원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에 인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단체의 주어진 역량에 비해 사업 수가 많다보니 이벤트성으로 치러내는 데 온 힘을 기울여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는 오히려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체의 위상과 조직의 강화, 사회변화 효과라는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직·재정

(1) 창립발기인이 162명이었는데 현재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는 68명, 전체 예산 중 회비 수입 비중도 8.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재정이 회원의 회비가 아니라 이벤트성 단기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조직확장성과 재정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회비수입이 재정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공동대표제는 역할분담이 잘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빛이 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한 분을 상임대표로 선출, 조직과 재정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여부는 물론 회비 책정 단계에서도 직접 상의, 요청 드리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3) 일반회원이 재미와 의미를 피부로 느끼는 참여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회원확대, 조직강화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31일

감사 박광서 

나.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이지윤 간사가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낭독하니 오현석 회원이 결산(안) 중 송년회를 이문옥밝은사회상과 송년회로 나누

어 각각 사업비, 행사비로 항목이동하는 것을 건의하다.

건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예”하여 수정안대로 받기로 하다.

내부제보실천운동 2017년도 사업연혁		
1월	16	내부제보실천운동 출범 / 발대식(국회)
2월	04	의리이리 프리리 마켓 - 내부제보자 공익기금마련 플리마켓
	10	스토리펀딩 - '내부제보자' 진실을 말한 이유 (04.25.까지 75일간 진행 / 1,890건 후원 참여, 43,345,791원 모금)
3월	22	대선후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
	09	내부제보자 색출을 지시한 코이카 이사장 고발(성남지검)
	13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익제보지원본부 정책전달식
4월	24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 반부패 청렴공약 설문결과 기자회견
	01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명과 목표설정을 비전워크샵(서울 팀비전센터)
5월	19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청렴위원회 신설 촉구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26	5개정당 대선 후보자에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요구 성명서 전달
6월	26	'내부고발자를 발탁,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
	29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고영한 대법관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중앙지검)
7월	30	부패방지와 내부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안 공청회(정성호, 전해철, 이정미 의원 참여)
	09	'해군의 내부제보자 탄압과 국기문란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19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와 '제왕적 대법원장제' 철폐 등 법원민주화 촉구' 기자회견
8월	23	내부제보실천운동 <후원의 날> 공익제보자 힘! 토크콘서트(마지)
	11	인권위의 내부제보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진상 조사 촉구 및 공문 발송
	20	공익신고자 배현봉씨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건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공문 발송
9월	24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민관협력 반부패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이지문 상임대표)
	03	성범죄 대리합의 내부제보 여군장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국방부)
	03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 조치 성명서 발표
	04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내부제보자 보복성 징계 중단 촉구 공문 발송
	04	SBS 나도펀딩 & 해피빈 스토리펀딩 (09.22.까지 50일간 진행/ 729명 후원 참여, 8,731,304원 모금)
10월	19	조직강화와 발전을 위한 <비전워크샵> 워크샵(서울 예벗커뮤니티 센터)
	28	홍콩국제학교장 자녀 수시입학전형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 사실확인 촉구 공문 발송
11월	30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 / 고발인(한만수대표) 조사 착수
	07	'효성중공업의 한수원 입찰담합과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갑질 규탄' 성명서 발표
12월	02	공익제보자(황규한)에 대한 인사명령처분 촉구 기자회견(국정원 앞)
	01	(주)팜한농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이행촉구의 건 공문 발송
12월	08	2017 내부제보실천운동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29	영화 1급기밀 시사회

2017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결산(안)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회비 수입	정회원회비	6,890,000		지원비	인건비	직원급여	14,500,000		
후원 수입	후원금 및 행사	33,920,469				비정규직급여	7,678,368	행사용역 등	
편딩 수입	다음스토리편딩	36,879,696			관리비	소계	통신/소모품/발송	3,509,310	임대비 포함
	SBS편딩	6,170,408					25,687,678		
기타 수입	결산이자 등	70,307		사업비	입법 지원	토론회	1,082,770		
						입법활동비	1,802,530	심포지엄	
		195,640	기자회견						
		19,319,585							
		140,000	청렴강사 양성						
		5,586,000							
		28,126,525							
		80,823							
		955,750							
		612,000							
		500,000							
		4,424,895	편딩 후원						
		1,514,770	토크 콘서트						
		2,598,750							
		1,509,360	1,2회 차						
		5,273,050							
		17,469,398							
		1,000,000							
수입		83,930,880			지출		72,283,601		
					이월금		11,647,279		

다.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이지윤 간사가 수정보완이 필요한 정관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이에 대하여 가부를 묻고 모두 “예”하여 개정안을 승인하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일부 개정의 안

1. 개정 사유

- ▷ ① 단체 운영과 단체의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단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익적 운영 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총회 정족수를 과반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②,③ 현재 상임운영위원회가 아닌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장을 추천받아 위원장을 선출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관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 ④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필수 정관 요건에 맞춰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2. 개정 내용

- ▷ 정관 제1절 제14조 1항
- 정관 제2절
- 정관 제4절 제 26조 3항

2-1. 조문순번 변경

- ▷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신설로 기존 제40조 조문순서를 순차적으로 후순위로 변경함. (단, 해당 각조의 조문내용은 변경 없음.)

3.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표

구조문	신조문	비고
제1절 제14조 1항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1/5로 한다.	제1절 제14조 1항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제2절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변경	
제4절 제26조 3항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제26조 3항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명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월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③ 기부금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4. 참고사항

- ▷ 이상의 내용은 2018년 1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임.

라.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이지운 간사가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낭독하니 박광서 감사
 사가 2017년 결산(안)과 같이 이문옥 밝은 사회상을 경상비에서 사업비로 옮기는 것을 제안하다.
 이지문대표가 지출항목에 공모사업비가 빠진 것을 지적하여 내부제보자 지원비를 수정하고 공모
 사업비를 추가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안하니 의장이 가부를 묻고 모두가 “예”하여 예산(안)을 통
 과시키기로 하다.

2018 내부제보 사업계획(안)

1) 회 의

- 총회개최
- 운영위원회(연 2회)
- 집행위원회(매월 1회)

2) 입법활동 및 기구 설립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 6개단체 공동 공청회
 - : 청렴위 신설 공동 입법 청원 논의

3) 제보자 지원활동

- 내부제보자 상담센터 설립

4) 조직활동

- 청렴활동가(청렴강사) 육성
- 회원확대
- 회원 워크샵

5) 홍보활동

- 뉴스레터 발행
- 공익제보자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
- 캠페인 진행
 - : 공익제보 절차에 관한 홍보
 - : 청렴교육강화 (교과서 집필기준 내 포함)

6) 재정사업

- 후원의 밤
- 공모사업

2018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예산(안)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24,000,000		사업비	입법활동	토론회	2,000,000		
						입법활동비	2,000,000		
후원수입	후원금	24,000,000			내부제보지원	제보자지원	15,000,000		
						상담센터설립	2,000,000		
						교육활동	350,000		
사업수입	행사수입	10,000,000			회의비	총회	500,000		
						임원회	1,000,000		
						위원회활동비	1,200,000		
기타수입	공모사업	10,000,000			워크샵	임원워크샵	1,000,000		
						전체워크샵	1,000,000		
	소계	68,000,000			경상비	홍보비	홍보문자	350,000	
							홍보활동비	400,000	
				인식개선TF			1,000,000		
				뉴스레터			600,000		
				소계		28,400,000			
				일반관리비		임대료	600,000		
						통신/발송비	1,530,000	우편 등	
						소모품비	2,000,000		
						교통비	400,000		
						행사비	송년회	1,400,000	
							후원의밤	1,500,000	
				기타		이문옥 밝은사회상	3,800,000		
					업무추진비	400,000			
				소계	11,630,000				
				인건비	직원급여	20,400,000			
					용역급여	1,000,000			
					퇴직급여	3,490,000	2017년도포함		
					4대보험	1,451,200			
					후생기타	500,000			
					소계	26,841,200			
				예비비	경조비	300,000			
					기타	828,800			
					소계	1,128,800			
	수입	68,000,000			지출	68,000,000			

마. 기타 안건 : 의장이 기타안건이 있는지 묻다.

- 1) 이지문 대표가 정관 제 35조 1항 정관개정안을 1/5출석에서 과반출석으로 개정할 것을안건으로 상정하길 요청하다.
- 2) 한만수 대표가 사업계획(안)에서 공모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두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길 요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두 “예”하여 안건을 상정하여 위 요청안대로 받기로 하다.


11. 폐회선언 : 의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9시 05분에 총회를 마치다.

총회의 의사 진행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하다.

2018년 1월 31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의장 : 백찬홍 (인) 

서기 : 이영이 (인) 

2018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일시 : 2018년 12월 08일(토) 오후 7시
장소 : 문화살롱 기륜

내부제보실천운동

2018년도 제1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임시총회 회의록

1. 일시 : 2018년 12월 08일(토) 오후 7시
2. 장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기린
3. 출석회원 : 31명 (참석 31명, 위임 16명, 불참 16명)
4. 의장인사 : 의장 김형남 운영위원장이 인사 말씀하고 회의를 시작하다.
5. 성원확인 및 회원점명 : 이지윤 간사가 참석회원을 점명하니 정회원 63명 중 참석 31명, 위임 16명 불참16으로 보고하다.
6. 개회선언 : 의장이 정관 제14조 1항, 3항에 따라 정회원 63명 중 31명의 회원이 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개회 정족수가 되므로 내부제보실천운동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7. 서기지정 : 의장 김형남이 이지윤을 본 회의 서기로 추천하고, 모두가 동의하여 이지윤이 서기 및 서명날인 인을 선임하다.
8. 의안 보고 및 채택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고 동의 여부를 묻다. 가부를 묻고 모두 “예”하여 의안상정을 승인하다.
 제1호 의안 : 상임대표 선출의 건
 제2호 의안 : 상임고문 추대의 건
 제3호 의안 : 기타안건
9. 부의안건 심의
 - 가. 상임대표 선출(안)의 건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총회의 의결을 받다.
 31명의 참여인원 중 31명이 동의하여 상임대표 선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 나. 상임고문 추대(안)의 건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총회의 의결을 받다.
 31명의 참여인원 중 31명이 동의하여 상임고문 추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상임대표(3인)

김주언(85년 보도지침 폭로사건 언론공익제보자),
 박헌영(現 운영위원, 국정농단 내부제보자),
 송병춘(前 서울시 감사관)

상임고문(3인)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前 상임 대표단)

9. 폐회선언 : 의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9시 05분에 총회를 마칩니다.

총회의 의사 진행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하다.

2018년 12월 8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의장 : 김형남



서기 : 이지윤



상정의안



제 1호 의안

2018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18년 종합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8항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2018년도 활동과 업적을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총평:

(1) 2018년도 지출은 활동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 창립 첫해인 2017년보다 활성화가 미진한 듯하고, 특히 상임대표단의 교체 등으로 인한 조직의 불안정성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2. 조직·재정

(1)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가 2017년도 68명에서 2018년도에는 80명으로 소폭 늘기는 했으나, 2019년 중 회원 및 회비수입이 2018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도록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임원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2) 사회의 관심과 함께 일반회원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회원과 재원의 확보 노력이 요청됩니다.

2019년 2월 27일

내부제보실천운동 감사 박광서



제 2호 의안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18년 사업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3항

내부제보실천운동 2018년도 사업연혁

2018년 1월 16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2018년 1월 31일, 제2회 정기총회

2018년 3월 5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2018년 3월 13일, MB정권 금융계 비선실세 김승유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2018년 3월 14일, 내부제보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사무총장 면담요청 공문 발송

2018년 4월 3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2018년 4월 13일,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재임용 이행 촉구 공문 발송

2018년 4월 14일, 회원 체육대회

2018년 5월 2일, 교육부 적폐관료 청산 촉구 기자회견

2018년 5월 9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경희대 시민교육 프로그램 내부제보자 인터뷰(안중훈 운영위원)

2018년 5월 18일, 상담센터 설립 준비 1차 회의

2018년 6월 4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2018년 6월 27일, 임시운영위원회

2018년 7월 21일, 비상대책위

2018년 8월 25일, 운영위원회

2018년 9월 29일, 운영위원회

2018년 10월 1일, 청렴사회 민관실무회의 참석(배병태 운영위원, 전경원 위원 대참)

2018년 10월 5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석(이지문 상임고문)

2018년 10월 30일, 청렴사회 민관실무회의 참석(전경원 위원)

2018년 11월 2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석(이지문 상임고문)

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8일, 상명대 건 공정 판결 촉구 결의대회 참석(이영이 운영위원 외)

2018년 11월 16일, 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8일, 2018 이문옥밝은사회상,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1 2018년 사업보고

□ 총평

-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국민들의 촛불 심판이라는 역사적 분위기가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고발자의 확산과 사회적 문제의 전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그러나, 내부고발이 사회적 유익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자 제도로써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범위에서 머물러 있고, 정작 자기 조직의 문제로 다가오면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문제있는 자로 낙인찍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의 목표를 가진 내부제보실천운동이 발족 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내부고발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으나, 재정적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확장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한편 신임 상임공동대표단을 구성하여 2019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조직의 상근활동가 체계를 지속하지 못한 점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주요 사업 성과

- 전 하나은행장 김승유 구속 촉구 기자회견
- 교육부 적폐 관료 청산 촉구 기자회견
- 상명대 건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 2018 이문옥 밝은사회상,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 한계

-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함.
- 내부고발의 이슈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조직이나 사회가 내부고발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내부고발자를 위한 물리적, 심리적 안정 공간(Safety Zone)의 마련 필요.

내부제보실천운동 2018 활동실적

활동내용		내부제보실천운동 제 2회 정기총회			
일시	01.31	장소	마지	참여인원	약12명

정관 제 1절 13조에 의거 내부제보 제 2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다.
 참석인원 :37명 (참석 12명, 위임 25명, 불참 32명)
 의장 : 백찬홍



활동내용		전 하나은행장 김승유 구속 촉구 기자회견전			
일시	03.13	장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청사 앞	참여인원	약 6명



활동내용		회원 전체 워크샵			
일시	04.14	장소	볼링장 및 마지	참여인원	약 16명

2018 내부제보 사업계획 조직활동에 따라 회원 워크샵을 진행한다.
우천으로 인해, 실내에서 볼링대회를 진행 후 마지에서 뒤편이를 진행한다.



활동내용		교육부 적폐관료 청산촉구 기자회견			
일시	05.02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앞	참여인원	약11명



활동내용		경희대학생 내부제보 인터뷰			
일시	05.09	장소	마지	참여인원	약6명

- 경희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내부제보자에 대해 안종훈 운영위원 인터뷰 진행
 : 내부제보 사례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등에 대해 인터뷰 진행



활동내용		상명대 건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11.08	장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참여인원	약15명

-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박사의 상명대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사회 : 배병태 운영위원
 연대발언 : 효성공익제보자 김민규, 파인텍 노동자 차광호, 롯데 노동자 유근보님, 콜트트렉, 실업노조, 전국대학원노동조합 등



활동내용		2018 이문옥밝은사회상,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일시	12.08	장소	문화살롱 기룬	참여인원	약 50명

- 제 2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수상자 : 김미현검사, 정미현교사, 김기홍 사회복지사
- 임시총회
: 제 2대 상임대표 및 상임감사 선출
- 송년의 밤 진행



2 2018년도 결산서

○ 결산(2018.1.1. ~ 12.31.)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이월금	11,647,279		경상비	일반 관리비	임대료	650,000		
						통신/발송/소모품비	2,118,039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11,995,030			행사비	송년의 밤	1,223,120		
후원수입	후원금	3,480,000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61,600		
						소계	4,052,759		
사업수입	행사수입	770,000			사업비	입법지원	입법활동비	218,100	
기타수입	결산이자 등	861,072		내부제보 지원		이문옥밝은사회상	1,000,000		
				조직활동		회의비	1,312,800		
						워크샵	412,520		
				홍보비		홍보기획비	182,800		
						소계	3,126,220		
				인건비		직원급여	직원급여	16,380,322	
						퇴직급여	퇴직급여	2,340,653	
						4대보험	4대보험	1,658,923	
						후생기타	후생기타	750,000	
						소계	21,129,898		
				예비비	예비비	경조비	49,000		
						세금 및 수수료	287,270		
						소계	336,270		
	수입	28,753,381				지출	28,645,147		
					2018년 잔액 (수입-지출)		108,234		

제 3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정관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1항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일부 개정의 안

1. 개정 사유

▷ 의사결정단계를 간소화하여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행위원회 기구를 폐지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 정관 제15조 7항
- 정관 제2절
- 정관 제21조

3. 정관 개정(안)

구조문	신조문	비고
<p>제15조 7항 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p>	<p>제15조 7항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p>	
<p>제2절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p>	<p>제2절 운영위원회</p>	
<p>제21조 [집행위원회]</p> <p>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본 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하고 각 기구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p> <p>②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상임대표 중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고, 상임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대표들 중에서 상임대표가 지정한다.</p> <p>③ 집행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대표, 각 위원회의장과 사무처 책임자로 한다.</p>	<p>제 21조 삭제</p>	

4. 참고사항

▷ 이상의 내용은 2019년 2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임.

제 4호 의안

2019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19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3항, 제 15조 5항

1

2019년 내부제보 사업계획(안)

□ 사업목표

- 내부고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 내부고발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역점사업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제보자 상담지원

□ 기타사업

- 조직사업 : 회원 워크숍
- 홍보사업 : 팟캐스트 방송
- 연구학술사업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내부고발자 권익 침해 사례조사 및 대응

□ 기대효과

-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개선
- 내부고발의 권익 증진
-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공익 증진

□ 사업예산 총액 : 총액 43,108 천원

□ 세부사업계획

1) 회 의

- 총회개최
- 운영위원회(연 2회)

2) 입법활동 및 기구 설립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3) 제보자 지원활동

- 내부제보자 상담지원

4) 조직활동

- 청렴활동가(청렴강사) 육성
- 회원확대
- 회원 워크샵
- 임원 워크샵

5) 홍보활동

- 뉴스레터 발행
- 캠페인 진행
 - : 공익제보 절차에 관한 홍보
 - : 청렴교육강화 (교과서 집필기준 내 포함)

6) 공모사업

- 내부제보자의 심리적 위기 극복과 연대감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7) 재정사업

- 후원의 밤

2 2019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예산(안)

수 입				관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항	목	금액	비고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20,000,000		사업비	입법활동	토론회	1,500,000	
						입법활동비	1,000,000	
후원수입	후원금	8,000,000			내부제보 지원	제보자지원	3,000,000	
						상담지원	2,000,000	
						교육활동	350,000	
이문옥밝은사회상	3,000,000							
사업수입	행사수입	5,000,000			회의비	총회	500,000	
						운영위원회	500,000	
기타수입	공모사업	10,000,000			워크샵	임원워크샵	500,000	
						전체워크샵	1,000,000	
전년도 이월		108,234		홍보비	홍보기획비	500,000		
					뉴스레터	300,000		
						공모사업비	10,000,000	
						소계	24,150,000	
				경상비	일반관리 비	관리비	600,000	
						통신/발송비	1,200,000	우편 등
						소모품비	600,000	
						교통비	300,000	
					행사비	송년회	1,400,000	
						후원의밤	1,500,000	
					기타	업무추진비	200,000	
					소계	5,800,000		
				인건비	활동가급여	8,400,000	70만×12	
					용역급여	3,600,000	30만×12	
					퇴직급여	-		
					4대보험	-		
					후생기타	-		
					소계	12,000,000		
				예비비	경조비	200,000		
					기타	958,234		
					소계	1,158,234		
	수입	43,108,234			지출	43,108,234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부 록

*정관

*회원명단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제 정 : 2017년 3월 15일

1차개정 : 2018년 1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공익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활성화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내부제보의 상담, 안내와 지원 등을 통한 내부제보자 권익 보호 사업
2. 내부제보사건의 신고 및 조사 담당기관 및 수사기관의 공정한 처리 촉구
3. 공직기관, 기업체, 학교 대상 내부제보 활성화 교육 및 캠페인
4. 내부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 사업
5.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 준비와 지원
6.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활동
7.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1. 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3. 각 회원의 가입절차와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 단체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내규를 지킬 의무
2. 본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모임협의회]

- ① 본 단체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2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과 방식]

-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안에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이상 이나 감사의 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 전원의 명의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 중 연장자가 맡으며, 상임대표 불출석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맡는다.
- ④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 [정족수]

- ①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으로 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총회의 구성원이 불출석할 경우, 출결 및 안건의 의결권을 출석 회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본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8. 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9. 기타 본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② 총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위촉직 운영위원은 법률지원단장, 상담센터 소장 등 본 단체에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15명 내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전원 명의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감사 및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재적 1/3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단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1/3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각 위원회의 장, 법률지원단장의 선출과 상담센터 소장을 임면하고,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준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

성·집행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④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 ⑥ 본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1조 [집행위원회]

-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본 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하고 각 기구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상임대표 중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고, 상임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대표들 중에서 상임대표가 지정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대표, 각 위원회의 장과 사무처 책임자로 한다.

제3절 공동대표, 상임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등

제22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 ① 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10인 내외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대표 중 3인 내외를 상임대표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상임대표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처를 지휘 감독한다.

제23조 [고문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내부제보활동 및 사회투명성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의 상임고문을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내부제보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상임대표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법률지원단 등]

- ① 원활한 상담 및 법적 지원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전문가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 ② 법률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상담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센터를 둘 수 있고, 상담센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

- ①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의 사실이 있거나, 감사 결과 긴급한 의결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후원회

제26조 [위원회]

- ① 본 단체는 기획, 재정, 홍보, 조직, 대외협력 등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회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자 희망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활동기구]

- ①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 및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기구는 본 단체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처]

- ①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총장은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무와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사무에 관하여는 상임대표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④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무국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궐위 시 사무국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후원회]

① 본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후원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0조 [지역조직]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1조 [부설기관]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32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과 결산]

① 사무총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34조 [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정관개정

제35조 [정관 개정]

- ① 본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 ② 개정안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

제36조 [해산 사유]

본 단체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7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8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칙

제39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대표단, 사무총장, 각 위원회의 장이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본부의 주요 직책을 맡거나 상임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의 권한이 정지되며 선거활동 종료 이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명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

개한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월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 ③ 기부금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제41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정관은 2017년 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8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준비위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내부제보실천운동 회원명부

고혜영	김연숙	박광서	신광식	이영이	차성복
권승구	김영수	박오복	신현철	이종헌	최석근
권오영	김영숙	박종린	안종훈	이지문	하윤옥
권희청	김영인	박헌영	안천식	장경선	한경호
김나린	김은영	박헌배	양시경	전경원	허태곤
김동숙	김이슬	배병태	오현석	정미현	황규한
김명환	김주언	배현봉	유인정	정유진	
김미현	김준	백수인	이경애	정현경	
김민규	김현진	백찬홍	이도희	조대희	
김상균	김형남	서석정	이민경	조승현	
김서중	김희정	석지관	이상훈	조은혜	
김성환	류수연	송병춘	이석만	조재현	

